

SGA상 ‘Romalpa’ 조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omalpa’ Clause under SGA

민 주 희* Joo-Hee Min

목 차

I. 서론	IV. 결론
II. 소유권유보 조항의 개관	참고문헌
III. ‘Romalpa’ 조항의 쟁점	Abstract

국문초록

매수인의 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명시한다.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이후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였고, 매도인에게 확대된 권리를 부여한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였다. 이 조항에서 매수인의 지급불능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권리가 영국회사법상 등록되어야 하는 담보(a charge)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등록되지 않는 한 ‘Romalpa’ 조항에서 명시한 매도인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SGA상 계약에서 명시한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장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주제어> 소유권유보조항, 담보, 수입관계

*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I. 서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매도인의 주된 의무 중의 하나이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영국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이하 SGA로 칭함)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매매계약은 금전상의 약인(a money consideration)을 대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한 계약을 의미한다. 즉 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최대 관심은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는 것이며 매수인의 최대 관심은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다.

소유권은 SGA 제17조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의도한 때에 이전될 것이지만, 특히 매도인이 물품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 이행에 대한 확실성이 보장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길 원한다. 따라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에 소유권유보 조항(Retention of title clause)을 삽입할 수 있다. SGA 제19조 제1항에서도 매도인은 계약상 특정 조건(certain conditions)이 이행될 때까지 물품의 처분권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매수인이 대금지급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때까지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소유권유보 조항은 매수인의 지급불능(insolvency)시 물품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한, 물품에 대한 점유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P. S. Atiyah, J. N. Adams and H. MacQueen, 2010). 이는 매수인의 지급불능 시에 매도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매도인은 매수인의 다른 채권자(creditors)보다 물품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Matthew D. J. Conaglen, 1996).

그러나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1976] 1 W.L.R. 678) 이후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 사건에서 계약에 삽입된 소유권유보 조항은 SGA 제19조의 기본적인 범위보다 더 확대된 권리를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사건에서 매수인이 지급불능 되는 경우,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였다면 매도인은 새롭게 생산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수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하에서 매매목적물을 전매(sub-sale)한 경우, 전매를 통해 수취한 물품대금(proceeds)에 대하여 매도에게 추급(tracing)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였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확대된 매도인의 권리를 인정하였고, 이후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 소유권유보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기 시작하였다. 매수인의 지급불능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가 확대된 'Romalpa' 조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계약서에 이 조항이 삽입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R. M. Goode, 1985; J. Spencer, 1989; Davies Iwan, 1991). 그러나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 이후 'Romalpa' 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확대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GA상의 소유권유보 조항으로써 논란이 되어 왔던 'Romalpa' 조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Romalpa' 조항이 계약상 매도인에게 부여한 권리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 조항을 통해 발생하는 쟁점 사항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그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한다.¹⁾

II. 소유권유보 조항의 개관

1. 소유권 이전의 의의

SGA에서 소유권이전 시기는 특정물(specific goods)과 불특정물(unascertained goods)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정물의 소유권은 계약당사자들이 의도한 때²⁾ 이전되며,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는 계약 조건, 계약당사자들의 행위, 그리고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SGA 제17조 제2항). 계약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른 소유권이전 시기는 선적시, 선하증권 제공시, 대금지급 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적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The Julia사건([1940] A.C. 293)에서 선적시 위험이 이전됨에 따라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에게 소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였지만, 대금지급의 확실성 없이 선적시 위험이 이전된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1) 한승철·김철호(1996), 석광현(2003), 정재완(2010), 민주희·송수련(2014), 이원정(2016)등의 논문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연구를, 양형우(2000), 김재국(2003), 이승우(2003) 등의 논문은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소유권유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SGA하의 소유권유보를 고찰하는 본 연구와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SGA 제18조에서는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규칙에 따르면 인도 가능한 상태에 있는 특정물의 무조건 매매계약시 물품의 소유권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2규칙은 특정물의 매매계약시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두기 위하여 매도인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행위를 하고 매수인이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3규칙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특정물의 매매계약시 대금을 확정하기 위해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중량, 용적의 측정, 검사 기타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완료되고 매수인이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 Bridge, 2010). 선하증권 제공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매도인이 선하증권에 배서하여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추정적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보여 준다(Lickbarrow v. Mason [1794] 5 Term Reports 683). 마지막으로 대금지급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매수인이 대금지급하면서 선하증권을 수취하거나(Ginzberg v. Haematite Steel Co Ltd [1966] 1 Lloyd's Rep. 343),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는 때에(The Prinz Adalbert [1917] A.C. 586)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물의 소유권은 물품이 계약에 무조건 충당(unconditional appropriation)되어 특정되기 전까지 이전되지 않고, 물품이 계약에 무조건 충당된 후에는 특정물의 소유권 이전시기를 따른다. 불특정물이 명세서에 적합하면서 인도 가능한 상태(deliverable state)³⁾에 있는 경우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매도인이, 혹은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매수인이 계약에 무조건 충당(unconditional appropriation)하면 그 때에 물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SGA 제18조 제5규칙 제1항). 계약당사자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무조건 충당(unconditional appropriation)’의 경우 매수인은 당연히 동의할 것이므로 결국 무조건 충당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는 매도인의 의사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M. Bridge, 2010). 그러나 매도인은 대금지급이 이행될 때까지 혹은 대금지급이 보장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충당은 조건부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M. Bridge, 2010). 또한 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송부할 목적으로 물품을 매수인,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인(bailee) 또는 보관인에게 인도하고 처분권(right of disposal)을 유보⁴⁾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무조건 충당된 것으로 간주한다(SGA 제18조 제5규칙 제2항).

2. ‘Romalpa’ 조항에 대한 법원의 인정

SGA에서 특정물의 경우 소유권은 계약당사자들이 의도한 때 이전되고, 불특정물은 무조건 충당(unconditional appropriation)되어 특정된 후에 특정물의 소유권 이전시기를 따르게 된다. 결국 특정된 물품의 소유권이전은 계약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판단할 것이

3) Underwood Ltd v Burgh Castle Brick and Cement Syndicate [1922] 1 K.B. 343; 물품의 인도 가능한 상태는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할 것을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의 외관 상태에 달려있다.

4) SGA 제19조는 처분권의 유보(Reservation of right of disposal)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특정물매매 혹은 물품이 이후 계약에 충당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조항 혹은 충당의 조건에 따라 특정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물품의 처분권을 유보할 수 있다. 둘째, 물품이 선적되고, 선하증권에 의하여 매도인 혹은 그의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 매도인은 처분권을 유보할 수 있다. 셋째, 환어음의 지급 혹은 인수를 위하여 환어음이 선하증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제시되는 경우, 매수인이 환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선하증권을 부당하게 소지하고 있다면 물품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나, 매도인은 대금지급의 확실성을 보장받기 전에는 소유권의 이전을 망설일 수 밖에 없다. 특히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여 점유권을 상실한 상황이라면 대금지급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매도인은 소유권을 유보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에 소유권유보 조항(Retention of title clause)을 삽입할 것이다. 계약에 삽입된 이러한 소유권유보조항은 유효하다고 인정되어 왔다 (McEntire v. Crossley Bross [1895] A. C. 457; Clough Mill Ltd v. Geoffrey Martin [1985] 1 W.L.R. 111). 즉 소유권유보 조항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을지라도 대금지급이 이행될 때까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인이 유보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서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목적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매수인이 지급불능상태 (insolvency)에 이르는 경우 점유를 상실한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자신의 물품에 대한 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P. S. Atiyah, J. N. Adams and H. MacQueen, 2010;).⁵⁾ 또한 소유권유보 조항은 매매목적물인 물품이 지급불능인 매수인의 재산의 일부가 되지 못하도록 방어함으로써 매도인이 대금지급 받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secured creditors)보다 자신의 우선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Compaq Computer v. Abercorn Group [1993] B.C.L.C. 602).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유보 조항은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1976] 1 W.L.R. 678) 이후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본 사건에서 네덜란드 매도인은 영국 매수인에게 알루미늄 호일을 판매하였다. 일반거래조건 제13조 첫 번째 파트에서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대금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인도된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 “매수인이 인도된 물품으로부터 새로운 물품을 만들거나 다른 물품과 혼합하거나, 혹은 인도된 물품이 다른 물품의 구성품이 되는 경우, 매수인이 지불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의 전액(full payment)에 대한 담보(surety)로써 새롭게 생산된 물품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부여된다 ... 물품 대금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매수인은 수탁자(fiduciary owner)로써 해당 물품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요구된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그의 통상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고 덧붙여졌다.

5) 소유권유보는 유치권 혹은 운송정지권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SGA 제41조의 유치권(Lien)은 매도인(unpaid seller)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지급불능(insolvency)이 되면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물품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SGA 제44조의 운송정지권(stoppage in transit)은 물품의 점유를 상실한 매도인(unpaid seller)이 운송이 종료되기 전에 상실하였던 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소유권유보는 매도인이 물품의 점유를 상실하여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물품을 점유한 이후에도 행사될 수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한 알루미늄 호일을 제3자(sub-purchaser)에게 전매(sub-sale)하였다. 매수인은 제3자(sub-purchaser)로부터 전매 대금을 받았으나 매도인과의 거래에 따른 122,000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채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매도인은 제13조의 소유권유보 조항에 근거하여 자신이 인도한 물품의 성질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그러나 매수인이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여 자신이 인도한 물품의 성질이 변화되었을지라도 이들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새로이 생산된 물품을 매수인이 전매한 경우 전매에 따라 매수인에게 지급된 대금을 자신이 추급(tracing)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매수인은 제13조에 근거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수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가 형성되어 있음을 인정하였고, 법원도 수임관계를 기초로 하여 매도인의 권리가 유보된 물품을 매도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 허용된 권한 내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한 대리인(agent)으로써 전매한 것임을 언급하였다. 즉 본인(principal)인 매도인의 대리인으로써 매수인이 수권된 권한 내에서 물품을 합법적으로 전매하였다면, 매수인은 본인인 매도인과의 수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수취한 물품대금(proceeds)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를 여전히 지니게 된다.

본 사건에서 소유권유보 조항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Simple Retention of Title Clause)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소유권유보조항의 형태로써 SGA 제19조 제1항에서는 매도인은 계약상 특정 조건(certain conditions)이 이행될 때까지 물품의 처분권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조건이라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일 것이다. 즉 대금지급이라는 매수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 이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 성질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Clough Mill Ltd v. Geoffrey Martin [1985] 1 W.L.R. 111). 그러나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에서 소유권유보 조항은 이러한 기준에서 더 나아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을 매수인이 다른 물품에 혼합하거나, 다른 물품의 구성품이 되는 경우에도, 즉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성질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여러 건의 계약을 통해 매수인의 지급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일부의 채무를 이행했는지라도 채무 금액 전액(all accounts)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은 여전히 해당 거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특히 “All Monies Retention of Title”이라고 함). 본 사건 이후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

다 매도인의 권리 범위가 확대된 소유권유보 조항을 'Romalpa' 조항으로 칭하기 시작하였다. 이 후 매도인의 권리가 확대된 이 조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계약서상에 'Romalpa'조항의 삽입이 급증하였다(R. M. Goode, 1985; Davies Iwan, 1991).

3. 'Romalpa' 조항에 대한 접근 방법

'Romalpa' 조항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보다 그 적용 범위가 복잡하여 이 조항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다. 첫째, 'Romalpa' 조항을 계약당사자들의 계약상 합의의 의도에 그 초점을 맞추어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Clough Mill Ltd v. Martin 사건([1985] 1 W.L.R. 111)⁶⁾에서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a freedom of contract)에 입각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의도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Armor v. Thyssen Edelstahlwerke AG 사건([1991] 2 A.C. 339)에서도 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Romalpa' 조항을 해석하였다. 결국 SGA 제17조와 제19조에 따라 계약상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매수인이 지급불능(insolvency)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해당 물품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의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법은 상업상 혹은 계약상 목적에 의하여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적 혹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a charge)를 설정하여 채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특정 채권자에게 독점적 권리(exclusive property)를 부여하지 않으려 한다(P. S. Atiyah, J. N. Adams and H. MacQueen, 2010). 따라서 'Romalpa' 조항에서 매도인의 권리는 담보의 설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Romalpa' 조항을 접근하는 또 다른 해석 방법이다.⁷⁾ 영국회사법

6) 계약서 제12조에 “물품의 대금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혹은 매수인이 자신의 고객에게 선의의 방법으로(by way of bona fide sale) 매도하는 때까지 매도인은 물품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 금전채무 전액이 지불되기 전에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다른 물품에 혼합되거나 다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대금이 지불될 때까지 매도인은 그러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에서는 계약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이 언급되어 있었으나, 본 사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신임관계에 대하여 계약상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7)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로 칭함) § 2-401(1)에 따르면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에 대한 권리의 유보는 담보의 설정을 통해 발생하는 담보권(security interest)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UCC에서는 담보권을 그 유형에 따라 각각 별개의 규정으로 규율하는 대신 하나의 단일화된 규정(a single set of regulations)을 적용함으로써 실용적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받는다(William Davies, 2006). 따라서 UCC하에서 소유권유보는 담보(charge)로 인정되어 담보의 등록을 통해 담보권을 생성하게 된다(UCC § 9-203(a), § 9-502).

(Companies Act 2006) 제878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등록하지 않은 담보(a charge)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것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에 대하여 담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인의 담보권자들(secured creditors) 입장에서 매도인의 권리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영국회사법상의 담보는 금융거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데 이러한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정 의무에 대한 이행 담보로써 채권자에게 선취득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Richard Christou, 2013). 그러나 이러한 담보는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즉 “nemo dat quod non habet” 원칙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 만일 매수인인 채무자가 계약 조항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매목적물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해당 물품을 담보로 설정할 수 없게 된다(M. Bridge, 2010). 채무자인 매수인이 담보로 설정하지 못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결국 채권자인 매도인은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목적물을 담보로써 등록하게 한다 할지라도 매수인의 다른 담보권자들에 비하여 매도인은 후순위 채권자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Rolf B. Johnson, 1994; James Mitchell, 2016).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담보로 설정하는 것을 꺼려할 수 밖에 없다.

IV. ‘Romalpa’ 조항의 쟁점

1. 매수인이 생산한 물품(new products)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

1) 의의

기본적인 소유권유보조항(Simple Retention of Title Clause)에서는 매수인의 지급불능(insolvency)시에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성질이 변화되지 않고 인도된 물품 상태로 반환될 수 있는 경우,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음이 내재되어

8) 사실상 소유권유보조항은 상거래 목적상 매수인의 지급불능에 대하여 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국회사법상의 담보로 설정해야 하는 요건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있다(Clough Mill Ltd v. Geoffrey Martin [1985] 1 W.L.R. 111). 그러나 매수인이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하나의 부품으로써 그 성질을 상실하지 않은 채 완제품에 결합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성질을 상실하여 완제품에 혼합되는 경우도 있다. 'Romalpa' 조항에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new products)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를 다루는 경우, 'Romalpa' 조항에 근거하여 매도인이 새롭게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유효한 것인지 논란이 발생한다.⁹⁾

2) 물품의 성질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Hendy Lennox (Industrial Engines) Ltd v. Grahame Puttick Ltd 사건([1984] 1 W.L.R. 485)에서 매도인은 디젤 발전기 세트에 결합될 엔진을 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도한 엔진으로 디젤 발전기 세트를 생산할 것이고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것임이 계약체결 시 의도되어 있었다. 매수인이 디젤 발전기 세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인도한 엔진은 그 형태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인도된 상태의 엔진을 디젤 발전기 세트에서 분리할 수 있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은 물품의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 형태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디젤 발전기 세트에 결합되었고, 물품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분리될 수 있다면 여전히 매도인은 자신이 인도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Romalpa' 조항 하에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 성질을 상실하지 않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분리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의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3) 물품의 성질이 상실된 경우

Borden (UK) Ltd v. Scottish Timber Products Ltd 사건([1981] Ch. 25)에서 판지(chipboard)를 생산하는 매수인에게 매도인은 합성수지(resin)를 판매하였다. 계약에서 매수인이 물품 대금 전액을 지불하기 전까지 합성수지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규정하였고 계약당사자들은 판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합성수지가 사용될 것

9) UCC 제9-335호와 제9-336호에 의하면 소유권유보조항하에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다른 물품과 결합되거나 혼합되어 새로운 물품이 생산되는 경우 새로이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은 담보권(security interest)을 행사할 수 있다. UCC에서는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를 인정하므로 SGA하에서의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매수인이 지급불능이 되자 매도인은 판지에 합성수지가 구성되어 있는 비율만큼 자신의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매도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합성수지가 사용되면 그 물품의 성질을 상실하게 되어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되므로 존재가 사라진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원래의 성질을 상실하게 되면 새로이 생산된 완제품에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의 권리도 상실된다는 것이다.

또한 *Re Peachdart Ltd* 사건(1984 Ch. 131)에서 매도인은 핸드백을 제조하는 매수인에게 가죽을 판매하였다. 법원은 *Borden (UK) Ltd v. Scottish Timber Products Ltd* 사건의 입장과 유사하게 매도인이 인도한 가죽의 성질이 상실되면 이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은 상실되어 그 권리는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접근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삽입한 소유권유보 조항의 유효성을 일부 침해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적어도 가죽이 핸드백을 제조하는 과정에 사용된 후에는 가죽에 대한 매도인의 독점적 권리(exclusive property)는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 매도인은 생산된 핸드백에 대하여 영국회사법상 담보(a charge) 설정에 따른 권리를 가지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라고 설명하였다. 물론 *Clough Mill Ltd v. Martin*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상 계약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나, 그러한 매도인의 권리는 계약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근거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계약의 조건으로써 언급된 “채무 대금 전액이 지불되기 전에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다른 물품에 혼합되거나 다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채무 대금 전액이 지불될 때까지 매도인은 그러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 법원은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영국회사법상의 담보(a charge)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이러한 접근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초과이익(windfall profit)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계약상 단순히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자칫 계약상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무제한적인(uninhibited)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매수인은 자신의 노동과 경비를 소비하여 물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가 생성된 후에 매도인에게 그러한 물품 전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매도인이 초과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라고 판단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단지 물품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여 이를 전매함으로써 얻은 수익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듯 계약상 매도인의 물품과 다른 물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물품을 생산하도록 매수인에게 수권되는 경우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에 대하여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계약상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매수인이 물품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므로 매도인에게 물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exclusive property)가 부여된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대치될 수 밖에 없다(Rolf B. Johnson, 1994).

결국 'Romalpa' 조항에서는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성질이 상실되었는지의 유무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달라진다.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소유권을 유보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계약상에 'Romalpa' 조항을 삽입할 것이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Clough Mill Ltd v. Martin 사건에서 법원은 매도인의 소유권유보는 계약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유효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Romalpa' 조항에 의거하여 과연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확대된 권리가 유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 성질을 상실하여 원래 인도되었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면 매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실체가 사라졌으므로 법원은 매도인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것이다. 또한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매도인 자신이 인도한 물품이 혼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물품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은 그 물품에 대한 초과이익(windfall profit)을 매도인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치될 수 밖에 없다.

2. 추적(tracing proceeds of sub-sale)할 수 있는 매도인의 권리

1) 의의

매수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는 것이 매도인의 계약상 가장 큰 기대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도받은 물품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전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¹⁰⁾ 그러나 매수인이 지급불능이 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매(sub-sale)

10) 소유권유보조항하에서 매수인은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지 않는 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다.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물품을 제3자(sub-purchaser)에게 전매할

하여 수취한 대금(proceeds)이 있다면 그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은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기본적인 소유권유보조항(Simple Retention of Title Clause)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수취한 경우, 전매를 통해 받은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Michelin Tyre Co Ltd v. Mackerlane(Glasgow) Ltd (1917) 55 Sc. L.R. 35 HL; Hendy Lennox (Industrial Engines) Ltd v. Grahame Puttick Ltd [1984] 1 W.L.R. 485). 즉 기본적인 소유권유보조항하에서는 매수인의 지급불능 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Romalpa’ 조항은 매도인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상에 삽입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지급불능 시에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 자신의 권리(beneficial interest)를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할 것이다.¹¹⁾ 문제는 매수인과 제3자와의 거래에서 매도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매를 통해서 매수인이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도인은 ‘Romalpa’ 조항에서 매수인이 자신과 수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하에서 전매를 행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매수인의 전매 대금에 대한 계약상 권리(beneficial interest)를 주장하고자 한다.

2) 수임관계의 형성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에서 매수인의 채무 대금이 전액 지불될 때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탁자(fiduciary owner)로서 해당 물품을 보존하고 전매할 수 있음이 언급되었으나, 매수인의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추급(tracing)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다. 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과 수임관계 하에서 전매가 이루어진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법원은 매수인이

수 있으나, 제3자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꺼려질 수 있다. 그러나 SGA 제25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동의하에 물품을 점유하거나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the documents of title)을 인수하고 이들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매수인과 거래한 선의(good faith)의 제3자는 물품에 대한 온전한 권리(a good title)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이 매수인에게 합법적으로(lawfully) 이전되고, 매수인의 전매를 통해 제3자가 물품에 대한 권리증권을 선의(good faith)로 취득하였다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물품에 대한 유치권 또는 운송정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SGA 제47조 제2항 a호).

11) UCC 제9-315조에 의하면 소유권유보조항하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물품을 전매하여 받은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은 추급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전매 대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추급권이 인정될 수 있다. SGA와 달리 UCC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매 대금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매수인과의 수임관계에 대한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인정하였듯이 수임관계 하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수탁자로서 전매를 행하였다면 매수인은 전매를 통해 수취한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이 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지 계약상 매수인이 매도인의 물품에 대한 수탁자(bailee)라는 사실만으로 수임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임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수취한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은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Kelry C.F. Loi, 2008).

Re Andrabel Ltd 사건(1984 3 All. E.R. 406)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을 전매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계약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전매 대금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았고, 전매를 통해 수취한 대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할 것이 요구되지 않았다. 매도인은 수임관계에 기초하여 매수인의 전매 대금에 대한 계약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였으나, 단지 매수인이 매도인의 물품을 수탁자(bailee)로써 해당 물품을 보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수취한 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요구되었다면 매수인은 그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의 수탁자(trustee)로써 그 대금을 매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나, 매수인이 이러한 제한 없이 자신의 자산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매 대금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탁자가 아닌 단지 채무자(debtor)일 뿐이다.¹²⁾ 또한 대금지급시기가 기한부인 경우 매수인에게 더 많은 자율성이 부과된다. 대금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은 전매를 통해 수취한 대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전매를 통해서 수취한 대금으로든 아니면 이를 운용하여 달리 확보된 자금이든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물품에 대한 통제의 자율성과 전매 대금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수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결국 매도인의 지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

Re Andrabel Ltd 사건 이후 매도인의 전매 대금에 대한 지급권을 인정받기 위해 'Romalpa' 조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Tatung (UK) Ltd v. Galex Telesure Ltd 사건((1989) 5 B.C.C 325)에서 'Romalpa' 조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탁자(bailee)로써 대금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매도인의 물품을 자신의 물품과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했다. 또한 매수인이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을 혼합하거나 결합하여 생산된 물품

12)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에서는 매수인의 파산관재인(a receiver)이 매수인이 전매하여 수취한 대금을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매수인 또한 자신이 매도인의 수탁자로서 수임관계 하에 있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수인이 전매를 통해 수취한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이 지급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을 전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대리인(agent) 혹은 수탁자(bailee)로써 물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매수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전매를 하는지는 상관없이 전매를 통해 수취된 금액은 신탁(trust)으로써 매도인의 자산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매수인의 다른 재산과 구분되어야 했다. 이렇듯 앞서 언급된 사건과 비교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전매 대금에 대한 대금지급 받지 못한 채권자(unpaid creditor)로써 계약상의 권리(beneficial interest)를 요구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Romalpa' 조항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매도인의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계약상 명시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agent) 혹은 수탁자(bailee)로써 존재한다고 언급했음지라도 단순한 매수인의 지위에 대한 언급은 수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임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 또한 계약 전체의 목적과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기에 적절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Compaq Computer Ltd v. Abercorn Group Ltd [1991] B.C.C. 484).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수임관계의 형성을 위한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계약상 물품과 전매 대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매수인에게 요구됨으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수임관계로 설정하였음지라도 이를 충분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함을 추가함으로써 과연 어떠한 경우에 수임관계가 형성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주고 있지 않다.

3) 전매 대금에 대한 추급권의 성격

Tatung (UK) Ltd v. Galex Telesure Ltd 사건((1989) 5 B.C.C 325)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전매 대금에 대한 매도인 권리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매수인의 전매 대금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는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조건에 따라 수임관계가 형성되면 계약상 권리(beneficial interest)로써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a charge)로써 등록해야 하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의 전매 대금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가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의하여 상실되는(determinable) 것이라면, 이는 담보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써 전매 대금으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매수인의 의무는 수임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결국 매수인이 자신의 재산으로써 담보를 설정하여야만 매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견해는 Compaq Computer Ltd v. Abercorn Group Ltd 사건([1991] B.C.C. 484)에서도 적용되었다. 본 사건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대리인(agent) 혹은 수탁자(bailee)로써 전매 대금 전액(full proceeds)에 대한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고, 전매 대금을 구분하여

관리할 것이 규정되어 있었다. 법원은 계약상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agent) 혹은 수탁자(bailee)임을 규정하고, 전매 대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것은 수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으나, 매수인의 채무는 그 채무를 이행하면 전매 대금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가 상실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는 담보(a charge)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한 후 전매 대금 중 초과 이윤이 남아있다면 그 이윤에 대한 권리는 매수인에게 있음을 의도한 계약이나 다름없으므로 매도인의 전매 대금에 대한 권리는 담보에 기초한 제한적인 권리, 즉 매수인의 미지급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도인은 초과 이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매도인 권리의 성격은 전매 대금이 담보로 설정되어야 유효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전매 대금에 대하여 담보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담보권자들(secured creditors)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3. 시사점

현재까지 'Romalpa' 조항이 무효하다고 인정한 판례는 없지만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매수인의 대금지급불능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한, 그리고 매수인의 전매 대금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beneficial interest)를 주장하고자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Romalpa' 조항에 표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 하다. 법원은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는 그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상실되므로 이러한 채무의 성격을 담보(a charge)로써 판단하여 매도인이 주장하는 계약상의 권리(beneficial interest)를 무력화 시킨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들이 'Romalpa' 조항을 계약에 삽입하는 이유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전매 대금에 대한 대금지급 받지 못한 채권자(unpaid creditor)로써 계약상의 권리(beneficial interest)를 요구하는 것이지 담보(a charge)의 설정으로 인한 담보권(security interest)을 확보하길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Kelry C.F. Loi, 2008). 즉 담보권(security interest)대신 매수인의 지급불능(insolvency)시 매도인이 매수인의 담보권자들(secured creditors) 보다 계약에서 제공하는 우선적 권리(beneficial interest)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결국 'Romalpa' 조항이 담보권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제안된 것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Romalpa' 조항 하에서 확대된 권리를 매도인이 부여받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수임관계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료하다는 것과, 매도인의 권

리를 실무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담보권으로 접근함으로써 'Romalpa' 조항대신 매도인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국제 물품매매의 불안정성을 양산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은 담보의 설정 없이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담보권자들보다 계약상의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Rolf B. Johnson, 1994).

매도인을 보호할 수 없는 법의 무능력함은 결국 'Romalpa' 조항을 통해 매도인이 자신의 권리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게 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명료한 기준이 부재함으로 이에 대한 논쟁만 확산시킨다(Davies Iwan, 1991). 이러한 이유로 'Romalpa' 조항하의 매도인의 권리에 대한 법제화의 추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제화의 요구에 맞추어 비견되는 것이 UCC인데 이는 UCC가 계약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리적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William Davies, 2006). UCC는 계약의 상업적 목적에 부응하여 매수인의 담보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매도인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에 기초한다(William Davies, 2006). 적어도 UCC하에서는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하여, 그리고 매수인이 수취한 전매 대금에 대하여 완성된 담보권을 획득한 매도인에게 우선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UCC 제9-315호, 제9-335호, 제9-336호) SGA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과 수입관계에 의하여 거래를 이행하는지, 매도인의 권리가 담보의 설정에 의하여 부여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피할 수 있다. 비교적 명료하고 효율적인 UCC의 접근 방식에 견주어 영국에서도 'Romalpa' 조항에 대한 매매계약의 상업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의 제한 내지 기준을 명료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분쟁을 종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SGA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과의 수입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것이므로 'Romalpa' 조항 하에서 매도인에게 확장된 권리를 부여하는 시도는 의미가 없게 된다. 결국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계약상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명백한 경우는 SGA 제19조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이 계약에 명시된 때이지만 이를 통하여 계약상 매도인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Romalpa' 조항 하에서도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 성질을 상실하지 않고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로 반환될 수 있는 경우에만 매도인이 확장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매도인의 권리가 인정될 뿐이다.

IV. 결 론

매수인의 지급불능(insolvency)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이행될 때까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자기 방어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사건 이후 'Romalpa' 조항을 통해 매도인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Romalpa' 조항에서 매도인에게 부여하는 권리는 첫째,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으로 매수인이 새로운 물품을 생산한 경우, 매수인의 지급불능 시 새롭게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매수인이 지급불능이나 전매를 행한 경우 전매 대금을 매도인이 추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기본적인 소유권유보 조항의 유효성을 먼저 판단하였던 것과는 달리 'Romalpa' 조항에 대하여는 그 유효성 문제는 다루지 않은 채 매도인이 확대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하였다.

매수인이 생산한 새로운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에 대하여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 성질을 상실하여 원래의 상태로 반환될 수 없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로서 법원은 매수인이 생산한 물품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노동과 경비가 결합되어 이전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였으므로 새롭게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초과이익(windfall profit)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Clough Mill Ltd v. Martin 사건에서 언급하였듯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그들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배제하면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Romalpa' 조항 하에서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리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매수인이 전매한 경우 그 전매 대금에 대하여 매도인은 추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시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는 그 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매도인의 채권이 상실되므로 이러한 채무의 성격은 담보(a charge)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매수인의 전매 대금은 담보로서 설정되어야 매도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매수인과 제3자(sub-purchaser)간의 거래에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닌 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수입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Romalpa' 조항에서 매수인을 매도인의 대리인

(agent) 혹은 수탁자(bailee)로써 언급하고, 매수인에게 전매 대금을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도 법원은 수입관계는 계약상 당사자들의 의도,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계약상 매도인과 매수인간 수입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해석은 SGA 제19조에 근거하여 계약상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면서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오류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국 ‘Romalpa’ 조항을 통해 매도인이 확장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과의 수입관계가 계약의 명시적 조항과 거래 상황에서 명백히 드러나야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입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이다. 따라서 ‘Romalpa’ 조항 하에서는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 성질을 상실하지 않고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로 반환될 수 있을 때만 매도인은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참고문헌

- 김재국(2003), “동산의 소유권유보”, 『민사법연구』, 제11권 제1호, pp. 161-189.
- 민주희·송수련(2014), “벌크화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5권 제1호, pp. 131-152.
- 석광현(2003), “수입화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제51권, pp. 35-67.
- 양형우(2000), “所有權留保에 관한 법적 고찰”, 『비교사법』, 제7권 제1호, pp. 225-257.
- 이승우(2003), “한국 민법과 독일 민법상 소유권유보의 법리 비교”, 『비교사법』, 제10권 제4호, pp. 205-234.
- 이원정(2016), “CFR조건에서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pp. 435-461.
- 정재완(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운송물품의 소유권이전시기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5권, pp. 3-31.
- 한승철·김철호(1996), “貿易賣買契約에 있어서 所有權移轉時期에 관한 考察”, 『무역학회지』, 제21권 제2호, pp. 327-352.
- Davies Iwan(1991), *Effective Retention of title*, London: Fourmat Publishing.

- J. Spencer(1989), "The Commercial Realities of Reservation of Title Clauses", *Journal of Business Law*, May, pp. 220-232.
- James Mitchell(2016), "Retention of Title Clause: A Key to the Romalpa Maze", *Legal Issues J.*, Vol. 4, pp. 77-90.
- Kelry C.F. Loi(2008), "Tracing the Future of Romalpa Clause", *Restitution Law Review*, Vol. 16, pp. 76-95.
- M. Bridge(2010), *Benjamin's Sale of Goods*, London: Sweet & Maxwell.
- Matthew D. J. Conaglen(1996), "'Retaining' Title to the Mixtures and Manufactured Goods: A Principled Re-appraisal", *The Denning Law Journal*, Vol. 11, pp. 23-61.
- P. S. Atiyah, J. N. Adams and H. MacQueen(2010), *Atiyah's Sale of Goods*,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 R. M. Goode(1985), *Proprietary Rights and Insolvency in Sales Transactions*, London: Sweet & Maxwell.
- Richard Christou(2013), *Drafting Commercial Agreements*, London: Sweet & Maxwell.
- Rolf B. Johnson(1994), "A Uniform Solution to Common Law Confusion: Retention of Title under English and U.S. Law",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pp. 99-129.
- William Davies(2006), "Romalpa Thirty Years on - still an Anigma?", *Hertfordshire Law Journal*, Vol. 4, pp. 2-23.

A Study on 'Romalpa' Clause under SGA

Joo-Hee Mi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Romalpa clause as an extended or enlarged retention of title clause under SGA. Under a simple retention of title clause, the seller retains title to goods supplied until the goods have been paid. A simple retention of title gives the seller super-priority interest in other creditors of the buyer without registering a charge.

Aluminium Industrie Vaassen BV v. Romalpa Aluminium Ltd introduced the concept of 'extended reservation of title(so called 'Romalpa clause') in English law. It is because the Court of Appeal held that under an extended reservation about title clause the seller can trace his title into money which constitutes the proceed of sale by the buyer of goods supplied by the seller.

However, since Romalpa case, the courts are reluctant to uphold the seller's extended title. Under Romalpa clause, the seller attempts to extend his protection by laying claims to new products manufactured from his goods or to proceeds of sale by the buyer. Where the seller's goods are lawfully used by the buyer to create new goods, the property in the new goods will generally vest in the buyer. It is because there has been discomfort if the seller gains the windfall profit of the new goods.

Moreover, regarding tracing proceeds of sale by the buyer, the courts held that the seller must establish fiduciary relationship with the buyer. If the fiduciary requirement cannot be established, the extended retention of title clause is seen as a charge over the proceeds, and void if not registered. For these reasons, it is difficult that the claims based on the extended retention of title clause would be upheld.

<Key Words> Fiduciary Relationship, Retention of Title Clause, Romalpa Clause